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성공불제 적용신기술이 동일 종류의 환경시설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법령에 의한 당해 시설의 기본계획승인, 시설설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사업의 조기정착 및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30, 2008.4.22, 2012.7.27>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27, 2015.6.1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86호

환경부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15-41호, 2015.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유효성분”이란 제품 내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말한다.

제4조 중 “일반 생활화학제품의”를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로 변경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자는 수입 통관 또는 제품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성적서 등에 포함되는 생산·수입자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하려는 자는 종전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성적서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성적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7조의”를 “법 제7조에 따른”으로 변경한다.

별표 1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관리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 중 강도시험 관련 사항 및 제8조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별표 5] 첨부파일 참조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5-8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807,489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0,617천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8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